

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(정승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2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19.

제 출 자 : 김동규, 김동수, 김정택, 김진희, 김재국
나정숙, 박영근, 박은경, 성준모, 신성철
유 화, 윤석진, 이민근, 전준호, 정승현
주미희, 홍순목

1. 제안이유

- 안산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 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2. 주요내용

-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. (안 제2조)
-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3조)
- 위촉 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과 임기에 대하여 규정함. (안 제5~7조)
- 효율적인 자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8조)
-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규정함. (안 제11조)
- 위촉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과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2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

4. 관련법령 : 없음

5. 예산수반사항 : 9,300천원

- 회의 참석수당 : 4,800천원(80,000원 * 15명 * 4회)
- 위원회 운영비 (토론회 경비 등) : 4,500천원(1,500,000원 * 3개 분과)

6. 기타 참고사항 : 없음

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 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안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의회 및 안산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
2.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·조사분석 및 대안 개발에 관한 사항
3. 안산시의회의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·상임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상임위원장”이라 한다) 및 의원이 지정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사항
4. 그 밖에 의장이 의회 운영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촉 위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.

- ② 의장, 안산시의회 부의장(이하 “부의장”이라 한다),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된다.

제4조 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위촉) 위촉위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상임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.

1.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각 분야의 전문가
2. 전직 공무원, 교수, 회계사 등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
3. 그 밖에 지방의회 운영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

제6조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 중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촉해제)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.

1. 위원 본인이 사임 할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
3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4.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
5.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
제8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의회 상임위원회 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- ② 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7명 이내로 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.
-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분과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의회 상임위원장이 되고,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 다만, 분과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된다.

제9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전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,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제10조(자문) ① 의장·상임위원장 및 의원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 한 경우 위촉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문 받고자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의뢰서는 추후에 제출할 수 있다.
-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한다.

제11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안 심의 등과 관련되는 공무원,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, 토론회,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12조(실비변상) ① 위원회의 회의 및 자문,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청회, 토론회, 설명회 등을 개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협의 등) 위원회 회의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부 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자문의뢰 신청서

자문종류			
제명			
자문위원			
자문일시			
의뢰의원	소속	성명	

자문의뢰내용

- 1) “자문종류”는 서면의뢰, 면담의뢰 및 전화의뢰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2) “제명”은 의뢰내용의 주제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다.
- 3) “자문일시”는 희망하는 면담일시 또는 의뢰일시를 기재한다.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자문기록부

구분 연번	의뢰의원	제 명 (의뢰내용)	자문내용	의뢰일시
	자문위원			자문일시

- 1) “제명”은 의뢰내용의 주제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다.
- 2) “의뢰종류”는 서면의뢰, 면담의뢰 및 전화의뢰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
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721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. 10. 28.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본 조례안 제5조 제2호 위원의 위촉대상자에 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직 시의원도 지방행정에 전문적 의견이 있는 자로 판단되므로 일반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전직 시의원을 추가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위원의 위촉대상자에 전직 시의원을 추가(안 제5조 제2호)

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**안산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**

제5조제2호 중 “전직 공무원”을 “전직 공무원·시의원”으로 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원 안	수 정 안
제5조(위원의 위촉) ----- ----- -----	제5조(위원의 위촉) ----- -----
1. 생략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전직 공무원</u> , 교수, 회계사 등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	2. <u>전직 공무원·시의원</u> ----- -----
3. 생략	3. (현행과 같음)